

2 장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4장에 의거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학 관리는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 (목적)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처장·교무처장·재무처장·입학관리처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일
2.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일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결정에 관한 일
4.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
5. 국가장학금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 (장학사정관계)

1.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2. 장학사정관은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3.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장학금 지급

제7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중 학업성적 우수자
3.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4.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
5.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직계자녀
6. 국가유공자 등 법률규정에 명시된 자
7. 근로, 봉사 및 간부학생
8. 국가와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및 직계자녀
9. 공무원 채용후보자(5급 이상) 및 각 학과 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10. 신앙심이篤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 산학협동 공로자 및 직계자녀
12.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3.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14.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한 자
15. 기타 학생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6.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장학금)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1. ~ 14. <삭제 2012.11.1>

제8조의 2 (기타장학)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서 정한 장학금 외에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 3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급정지 및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퇴 및 제적된 자
2.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학칙을 위배한 학생 또는 학사경고자
4. <삭제>
5.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단, 총장장학금은 제외)
6. <삭제>
7. 학칙에 따른 이수학기 초과자(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8.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달성에 희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때
9.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경우 수혜기간동안 기준 성적 미달시(별표기준)

제10조 (장학금 지급원칙) 장학금 지급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
2. 지급액 :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3. <삭제>
4. 지급한도 :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한다. 단, 자격증취득, 대회수상, 해외연수 지원, 생활비보조, 교육훈련지원, 연수체재비지원, 봉사(근로), 글로벌리더장학, 기숙사장학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5.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현금 또는 은행 계좌입금으로 한다.
6. <삭제>
7.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경우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교내 타 성적장학과 이중수혜 불가 하며, 상위장학(수혜금액 상위)만 수혜가능하고, 연속장학 횟수에 포함된다. 단, 재직자전형장학금은 제외.
8. 총장A장학금 추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총장B장학금 추천 배정인원 1명 추가 배정한다.
9. 동점자 처리 기준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신입생 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신·편입성장학

구분	입시전형	선발요건	인원	장학금액	지급 기간
총장 I 장학	수사·정시	·해당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 합이 7등급이내인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예체능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등록금 전액 ·도서비 연간160만원 ·생활관비	4년
총장 II 장학	수사·정시	·해당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 합이 9등급이내인 자(모집단위 입학정원 10%이내)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예체능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해당자	·등록금 50% ·도서비 연간80만원 ·생활관비	4년

구분	입시전형	선발요건	인원	장학금액	지급 기간
		정지, 총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지역우수인 재장학I	수시	·지역고교(충청, 대전, 세종)출신자로서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등급 1.00~1.99인자(단, 80시수 이상) ·적용전형 : 학생부, 면접, 지역인재, 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검정고시 제외)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예체능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 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등록금 전액 ·도서비 연간80만원	4년
지역우수인 재장학II	수시	·지역고교(충청, 대전, 세종)출신자로서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등급 2.00~2.49인자(단, 80시수 이상) ·적용전형 : 학생부, 면접, 지역인재, 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농어촌전형 (검정고시 제외)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예체능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 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수업료 50%	4년

재학생장학

구분	선발요건	장학금액	지급 기간
총장장학	1. 총장A : 전학기 성적 4.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2. 총장B : 전학기 성적 3.5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3. 총장C : 전학기 성적 3.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4. 총장면학 : 전학기 성적 3.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배정인원 : 직전학기 각 학부 및 학과(전공)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예체능 15학점) 미만인자 지급불가	1. 수업료 전액 2. 수업료 50% 3. 수업료 30% 4. 수업료 20%	1학기
특별장학	1.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 2. 경제적 어려운 자로서 품행이 바르다고 인정되는 자 3. 관장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4. 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일정금액	일정 기간

구분	선발요건	장학금액	지급 기간
봉사장학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 및 봉사한 자 · 근로, 멘토, RE:born학습(선후배사랑학습공동체), 튜터, 어깨동무, 채플봉사, SNS홍보단, 대학홍보단, 기타봉사 등	일정금액	1학기
글로벌리더 장학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일정금액	1학기
교직원자녀 장학	본교 재직자의 자녀(2인까지 한함)로서 평점 2.0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4년
체육우수 장학	체육특기자로서 아래 지급방식에 따른다. 1. 1등급 :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우승 입상 2. 2등급 :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2위 입상 3. 3등급 :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3위 입상 단, 전국규모대회의 정의 및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수업료 전액 2. 수업료 2/3 3. 수업료 2/3	1. 1 년 2. 1 년 3. 1 학기
소망장학	가정경제가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기타가계곤란자 등	일정금액	1학기
국가유공자 장학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 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전액(본인) 등록금반액(자녀)	4년
희망장학	장애인복지법 29조에 의거 장애등급 1급, 2급, 3급 등록증 소지자	일정금액	1학기
가족장학	본교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직계가족 2명 이상 재학 중일 경우 학부 과정 학생 1인에게 지급	일정금액	1학기
학군단 장학	학군단(R.O.T.C) 학생 중 우수한 자로서 선발 및 지급기준은 학군단 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	1학기
벤처 프런티어 장학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인 경우 계속 지급 (2학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예체능15학점)미만 및 성적미달시 장 학금 지급 종료 단, 벤처프런티어위원회에서 구제될 경우 예외	· 등록금 전액 · 생활관비 · 해외연수비1회	4년